

신용카드 가맹점 특약서

- 수기매출전표(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특약 -

주식회사 KB 국민카드(이하 "갑"이라 한다)와 [REDACTED]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주문서에 의한 물품판매(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수기매출전표(이하 "수기판매"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한다

제 1 조 (판매대상 회원 및 물품)

"을"은 본 특약에 의한 "주문판매" 대상 회원을 "갑" 및 "갑"의 제휴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소지한 국내회원과 해외카드사 회원으로 한정하며, 판매대상 물품은 "을"이 주문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판매하는 거래포함)으로 한정한다

제 2 조 (신용판매한도 제한)

- ① "수기매출전표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월간)신용판매에 따른 한도액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갑"은 "을"과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및 본특약 또는 가맹점 약관 위반 시 "을"에 대한 신용판매 매입(승인)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제 3 조 (거래승인)

- ① "을"은 신용판매하는 모든 거래건에 대하여 매출건별로 정해진 Lay-out에 따라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승인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갑"이 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신원인증을 거쳐야 한다
 - 1) "갑" 및 "갑"의 제휴은행이 발행한 카드는 안전결제(ISP)와 "갑" 및 "갑"의 제휴은행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 2) "갑"의 제휴은행이 정한 안심클릭 및 "갑"의 제휴은행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 3) 해외에서 발행한 Visa 카드에 대하여는 Verified by Visa
 - 4) 해외에서 발행한 Master 카드에 대하여는 MasterCard Secure Code
- ③ 제①항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 및 회원의 결제능력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바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이 정한 제②항의 전자상거래 신원인증 방법 또는 "갑"과 "을"간에 별도로 합의된 방법을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신용판매거래로써 "을"이 본인의 물품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별도의 협의를 통한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경



04303003

 KB국민카드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거래승인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회원이 별도의 **Data**를 입력하는 경우 “을”은 해당 **Data**가 암호화되어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Data**를 보관할 수 없고, “갑”이 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을”은 해킹 등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내역이 “을”의 내부직원 또는 외부의 제 3 자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신용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반드시 회원이 구입한 상품 및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물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또는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회원의 구입상품 및 용역대금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거래내역을 작성한 후 거래대금 매입을 청구한다
- ② “을”은 “주문판매”에 의한 매출전표 작성과 관련하여 매출전표 필수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매출일자는 “승인일자”로 고객서명란은 “수기판매”로 기입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예외적용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로부터 접수한 총 신용판매대금 중 정상매출분(취소매출분 포함)에 대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신용판매대금을 “갑”이 정한 대금지급주기에 따라 “을”이 지정한 대금결제용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단, 동 기일의 최종일이 일요일 또는 “갑”的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입금한다

제 5 조 (부도반환)

“갑”은 “을”이 청구한 거래대금 중 매출전표의 회원번호 ERROR, 이중청구, 판매시 거래 미승인 및 승인오류, 거래정지, 할부기간 오류 등의 사유로 대금결제가 불가한 건들은 반송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자료보관 및 제출)

“을”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경우 “을”은 “갑”的 협의를 득한 후 매출전표작성을 생략할 경우 그 거래에 따른 주문접수자료 및 이용자 관리자료(매출증빙서류 및 본인앞 물품배달송증) 및 회원의 주문접수자료를 매출일 익월로부터 5 년간 보관하며 “갑”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담보)

- ① “갑”은 “을”에게 본 특약 또는 가맹점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회원과의 계약내용 위반 및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갑”(“갑”的 제휴은행 포함) 또는 “갑”的 회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1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갑"이 정하는 금액의 예금질권 설정(예금질권설정승낙서 포함)
- 2) "갑"이 정하는 금액의 『손실보증금』으로 제공
- ② "갑"은 "을"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매입(승인)한도, 민원점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③ "을"은 제①항 1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본 특약 외에 예금질권설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 ④ "을"은 제①항 2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갑"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 ⑤ 제①항의 1 호의 계약담보는 유효기한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①항의 손해는 "을"이 영업장 폐쇄, 영업중단, 기타 사유로 회원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본 특약 또는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⑦ "을"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갑"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갑"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을"은 이를 제 3 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손해발생시의 책임)

- ① "주문판매"에 의한 카드 매출 후 회원의 이의제기(주문사실 불인정, 금액상이, 물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반환요청, 배송사고, 파손 등) 또는 "주문접수과정"에서 "을" 또는 "을"이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로 회원과 "을" 또는 "을"이 업무를 위탁한 업체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을"이 해결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 또는 회원이 손해배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단, 주문사실 불인정은 "을" 또는 "을"이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본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 및 "을" 또는 "을"의 임·직원에 의한 허위거래를 포함한다)이 인정되는 경우와 할부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을"이 제①항에 규정한 "을"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동 매출을 취소하거나 다음 번 청구금액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갑"은 "갑" 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을 못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 중 1 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예금질권의 목적물과 상계 또는 추심
 - 2) "손실보증금"과 상계
- ④ 기타 본 특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 "을"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갑”과 “을”은 서면으로 특약해지 및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제①항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특약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는 등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한 경우
 - 3) “을”이 본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본 특약과 관련하여 제 9 조에 의한 계약담보의 청구 기타 “갑”의 정당한 이행요구에 대하여 “을”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③ 제②항에 의한 특약 해지일자는 서면 통지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불구하고 “갑”이 특약을 해지한 날을 그 효력발생일로 한다.

제 10 조 (민원발생 처리)

- ①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的 귀책사유 사안에 따라 각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② 결제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원의 이의제기(주문사실 불인정, 금액상이, 물품에 대한 불만족에 의한 반환요청, 배송사고, 파손 등)시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원 해결이 지연될 경우 “갑”은 제 6 조의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 해당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고 동 대금을 이미 “을”에게 지급한 때에는 “갑”은 차기 대금지급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주문사실 불인정은 “을” 또는 “을”이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본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 및 “을” 또는 “을”의 임·직원에 의한 허위거래를 포함한다)이 인정되는 경우와 할부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 11 조 (계약담보 환원)

“갑”은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1 개월이 도과한 시점 이후 “을”的 계약담보금 환원 요구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갑”的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을”的 매출 중 “갑” 회원의 카드 거래승인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페이플랜 전환금액 제외)의 총액을 고려하여 “을”에게 계약담보를 환원할 수 있다.

제 12 조 (정보유출금지)

"갑"과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 및 "갑"의 회원정보를 물품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특약의 우선적용)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맹점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B 국민카드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 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한)

본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한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서면에 의한 특약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특약만료일 익일부터 1년씩 유효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가맹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특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 15 조 (분쟁의 조정)

본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간의 기 체결된 가맹점약관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이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권리의 양도금지)

"을"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양도 및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7 조 (청렴계약 이행의무)

- ①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 "을"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갑", "을"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 ③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 "을"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합의관할)

"갑", "을"간에 본 특약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을)

본인은 위 약정내용을 확약하고 가맹점약관 및 이 특약서 1 부를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을) _____ (인)
주소